

## 제13장 통신<sup>1</sup>

### 제13.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 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그 밖의 조치, 그리고
  - 라. 정보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2.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 다. 사설망을 운영하는 인이 제3자에게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설망을 이용하는 것을 당사국이 금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 제13.2조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sup>2</sup>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sup>1</sup> 이 장에 규정된 의무들을 대신하여, 코스타리카는 부속서 13-다에 규정된 의무들을 이행한다.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3.2 조는 당사국이 기업에게 자국의 영역에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 승인 또는 그 밖의 유형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소유 또는 전용 회선과 접속하는 것
  - 라. 교환, 신호,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 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관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공중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미공개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 다. 망과 상호 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그리고
  - 라. 채택되거나 유지될 경우 투명하고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는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

### 제13.3조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의무

#### 상호접속

1.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의 상호접속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번호이동성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sup>3 4</sup>

#### 동등 다이얼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sup>5</sup>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 내에서 동등 다이얼을 제공할 것, 그리고
  - 나. 그 당사국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이 부여될 것

### 제13.4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효율 또는 품질, 그리고

<sup>3</sup> 제 2 항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니카라과와 한국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번호 이동성은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망 간에만 가능할 것이다.

<sup>4</sup> 이 항을 준수함에 있어, 당사국들은 유선 전화에 대한 번호 이동성을 제공하는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sup>5</sup> 제 13.3 조 제 3 항가호는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 제13.5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다.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 제13.6조 재판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sup>6</sup>

### 제13.7조 망 요소 세분화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3.8조 상호접속

#### 일반조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

<sup>6</sup> 자국 법 또는 규정에 규정된 경우, 당사국은 제한된 범주의 가입자가 소매로 이용 가능한 공중 통신 서비스를 도매 요율로 획득한 재판매자가 다른 범주의 가입자에게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 라.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그것과 상호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 나.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 다.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상호접속 제안 및 협정의 공개*

3.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 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 자국 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한다.

**제13.9조**

###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sup>7</sup>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효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고정요율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 규제기관에 부여한다.

#### 제13.10조 설비 병설

1.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 효율로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어느 구역이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당사국은 자국 법 또는 규정에 그와 같은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11조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sup>8</sup>에 대한 접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효율로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제13.12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로서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인가받은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육상 설비를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해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한다.

#### 제13.13조

<sup>7</sup> 제 13.9 조는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에게 세분화된 망 요소로서 전용회선 제공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up>8</sup> 각 당사국은 육상선로에 대해서만 이 의무를 이행한다.

## 정보 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정보 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sup>9</sup>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아니한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 나. 그러한 서비스 효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 다. 그러한 서비스의 효율표를 제출할 것
-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 마. 공중 통신 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정보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14조 독립적인 규제기관<sup>10</sup>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금융 지분을 보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 제13.15조 보편적 서비스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갖는다.

2. 그러한 의무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당사국은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 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13.16조

<sup>9</sup> 이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을 통하여 자국 영역의 어떠한 서비스가 정보 서비스인지를 분류할 수 있다.

<sup>10</sup>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는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자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자원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허가 및 그 밖의 승인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sup>11</sup>을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또는 승인 기준 및 절차
  - 나. 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13.17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10.4조(시장접근)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10.1조제3항(적용범위)의 운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자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제10.4조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 제13.18조 집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제13.2조부터 제13.12조까지 규정된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권한은 금전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이나 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의 수정·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하는 제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 제13.19조 통신 분쟁의 해결

---

<sup>11</sup> 이 장의 목적상, 승인이라는 용어는 당사국이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사업권, 허가, 등록 또는 그 밖의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8.3조(행정절차) 및 제18.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이의신청

- 가. 1)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은 제13.2조부터 제13.12조까지 규정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법규에 수립된 절차에 따라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 2)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효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에 의한 심사를 구할 수 있다.

#### 사법적 재심<sup>12</sup>

-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당사국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얻을 수 있다.

### 제13.20조 투명성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자국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최종이용자 효율표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 나. 이해관계인이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와 합리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
- 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규범제정에 있어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모든 의견이 공개될 것, 그리고
- 라.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1) 다음에 관한 조치
    - 가) 서비스의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 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다)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

<sup>1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 법규에 따라 사법적 재심 요청 전 행정 구제의 완료를 요구할 수 있다.

건, 그리고

- 라)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그리고
- 2)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절차에 관한 절차

### 제13.21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어떠한 당사국도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상용 이동 서비스를 포함한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정당한 공공정책 이익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요건에 따라 선택할 유연성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sup>13</sup>.

### 제13.2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 제13.23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용 이동 서비스**란 이동무선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동등 다이얼**이란 최종이용자가 어느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동등한 자릿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하며,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sup>13</sup> 파나마의 경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통신규제기관이 각각의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적절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없는 것

## 정보서비스란

- 가. 한국의 경우,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12호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 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파나마의 경우,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생성, 취득, 저장, 변환, 가공, 회수, 활용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출판은 포함하지만 통신시스템의 관리, 통제 또는 운영이나 통신서비스의 관리를 위한 능력의 사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특정 고객 또는 그 고객이 선택한 그 밖의 이용자들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에 품질·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중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정보 서비스는 제외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하려는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부속서 13-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적 의무**

**제1절**  
**한국**

1. 제13.7조, 제13.8조제1항가호, 제13.8조제1항마호, 제13.8조제2항가호, 제13.10조 및 제13.11조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3.8조제1항나호, 제13.8조제1항다호, 제13.8조제1항라호 및 제13.9조에 대하여,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3.19조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합치하게, “별정통신 사업자”는 유선이나 무선 또는 다른 전송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를 소유할 수 있으며, 허가된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송 설비를 통하여 자신의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이다.
4.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 그리고 제13.9조부터 제13.11조까지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절 중미 공화국

1. 제13.7조, 제13.8조제1항가호, 제13.8조제1항마호, 제13.8조제2항가호, 제13.10조 및 제13.11조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sup>14</sup>에 대하여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3.8조제1항나호, 제13.8조제1항다호, 제13.8조제1항라호 및 제13.9조에 대하여,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는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3.19조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부터 제13.11조까지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니카라과의 경우, 제13.3조제2항, 제13.3조제3항, 제13.5조 및 제13.8조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파나마의 경우, 제13.5조와 제13.8조는 지배적 사업자로 정의된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조항들은 당사국이 GATS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이러한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이러한 조항에 규정된 요건들의 부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sup>14</sup> 니카라과의 경우, **별정통신 사업자**는 유선이나 무선 또는 다른 전송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를 소유할 수 있으며, 허가된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송 설비를 통하여 자신의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 부속서 13-나 지방서비스

니카라과는 자국 영역의 시골지역 전화회사를 지정하고 제13.3조제2항, 제13.3조제3항 및 제13.4조부터 제13.11조까지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골지역 전화회사가 그 당사국 영역에 설치된 가입자 회선의 2퍼센트 미만에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시골지역 전화회사가 공급하는 가입자 회선의 수는 그 회사 및 그 소유자, 자회사 및 계열사가 공급하는 모든 가입자 회선을 포함한다.

**부속서 13-다**  
**통신서비스- 코스타리카에 적용 가능한 의무**

**제1조**  
**적용범위<sup>15</sup>**

1. 이 부속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하여 코스타리카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나.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sup>16</sup>의 의무에 관하여 코스타리카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다.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관하여 코스타리카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그 밖의 조치
2.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하여 코스타리카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코스타리카에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코스타리카에 요구하는 것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기업에 강제할 것을 코스타리카에 요구하는 것, 또는
  - 다. 사설망을 운영하는 인이 제3자에게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설망을 이용하는 것을 코스타리카가 금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제2조**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sup>17</sup>**

1. 코스타리카는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sup>1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는 시장 접근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지 아니한다.

<sup>16</sup> 공중 통신 망 공급자는 적절한 인가를 받아 공중 통신 망을 운영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하는 공중 통신 망 “운영자”로 양해되며 공중에 이용 가능한 통신 서비스를 공급할 수도 있고 공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sup>17</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2 조는 코스타리카가 자국 영역에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에 면허, 승인 또는 그 밖의 종류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코스타리카는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소유 또는 전용 회선과 접속하는 것
- 라. 교환, 신호,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코스타리카는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는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공중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미공개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코스타리카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 다. 망과 상호 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 라. 채택되거나 유지될 경우 투명하고 코스타리카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

청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는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 그리고

- 마.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소유 또는 전용 회선과 접속하기 위한 제한

### 제3조 상호접속

1. 가. 코스타리카는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간접적으로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코스타리카는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 다. 코스타리카는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공중 통신 서비스공급자에게 그들의 상호접속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상호접속 의무*

2. 코스타리카는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에 따라
  -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 라.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

3. 코스타리카는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그것과 상호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 나.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 다.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 상호접속 제안 및 협정의 공개

4. 코스타리카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코스타리카는 그러한 제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5. 코스타리카는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6. 코스타리카는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7. 코스타리카는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 자국 영역의 그 밖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한다.

### 제4조 경쟁보장장치

1. 코스타리카는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다.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sup>18</sup>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 제5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로서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인가받은 경우, 코스타리카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 있는 그 해저 케이블 시스템(육양 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한다.

---

<sup>18</sup> 이 정보는 적용 가능한 법규에 따라 산업적, 상업적 또는 경제적 비밀인 경우 제공될 수 없다.

## 제6조 정보 서비스의 공급조건

1. 코스타리카는 자국이 정보 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sup>19</sup> 자국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아니한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 나. 그러한 서비스 효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 다. 그러한 서비스의 효율표를 제출할 것
-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 마. 공중 통신 망에 대한 상호접속 이외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정보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1. 코스타리카는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코스타리카는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금융 지분을 보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코스타리카는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 제8조 보편적 서비스

1. 코스타리카는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갖는다.

2. 그러한 의무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코스타리카는 자국의 보편적 서비

---

<sup>19</sup> 통신규제기관은 자국 영역 내 정보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분류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스의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 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9조 허가 및 그 밖의 승인

1. 코스타리카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sup>20</sup>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때, 다음을 공개한다.

-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또는 승인 기준 및 절차
- 나. 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자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2. 코스타리카는,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10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코스타리카는 주파수·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코스타리카는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코스타리카의 조치는, 제10.4조(시장접근)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10.1조제3항(적용범위)의 운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게 적용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제10.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 제11조 집행

코스타리카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이 부속서의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의무에 관한 코스타리카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권한은 금전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이나 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의 수정·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하는 제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sup>20</sup> 이 부속서의 목적상, 승인이라는 용어는 코스타리카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사업권, 허가, 등록 또는 그 밖의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제12조 공급자 간 국내 통신 분쟁의 해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

제18.3조(행정절차) 및 제18.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코스타리카는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 가. 1)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는 이 부속서의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코스타리카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 법규에 수립된 절차에 따라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 2) 코스타리카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에 의한 심사를 구할 수 있다.

사법적 재심

-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코스타리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코스타리카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sup>21</sup>을 얻을 수 있다.

## 제13조 투명성

1.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코스타리카는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 가. 다음에 관한 조치
  - 1)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 4)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그리고

<sup>2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재심은 제 18.4 조(재심 및 불복청구)에서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나.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절차에 관한 절차
2.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코스타리카는 다음을 노력한다.
- 가.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자국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최종이용자 요율표를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하도록 할 것, 그리고
  - 나.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사전 공고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

### **제14조 기술 선택의 유연성**

코스타리카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정당한 공공정책의 이익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요건에 따라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부속서와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이 부속서가 우선한다.

### **제16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하며,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특정 고객 또는 그 고객이 선택한 그 밖의 이용자들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공중 통신 망**이란 정의된 망 종단점 간에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한 통신 서비스**란 코스타리카가 법규에 따라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것을 수반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하려는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코스타리카의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